

## 보건복지동향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

- 편집자 주 -

### 개방병원 30개 시범기관 확정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 의사가 종합병원의 남아도는 장비와 수술실·입원실을 이용하여 자신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개방병원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범기관으로 전국에서 총 130개의 종합병원이 신청하여 평균 4.3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병상이용률·진료과목 수·장비구비도·인구증가율 등 6개 평가항목에 대해 병원규모와 자치단체의 인구수를 감안하여 차등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30개 기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범기관은 선정된 시점부터 2002년 12월까지 운영되며, 보건복지부는 시범기관을 통해 운영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개방병원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 이번에 선정된 30개 시범기관에 대해서 『개방병원시범기관』임을 표시하도록 허용하고, 2002년도 의사인력 배치시 순천병원과 호남병원을 제외한 28개 수련병원에 인턴 또는 가정의학과 전공의 1인을 추가로 배정하며, 도·농통합지역의 지방공사의료원에는 공공보건 의료기반확충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함.
- 한편, 대한병원협회에서 금번에 시범기관을 신청하고도 누락된 의료기관에도 『개방병원시범기관』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해 오며 따라, 보건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상 개방병원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누락된 의료기관에도 『개방병원시범기관』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방침임.

## 한미사회보장협정 정식 발효

2000년 3월 13일 체결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이 2001년 4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된다. 동 협정의 발효로 미국에 단기(5년 이내) 파견되는 우리 기업 근로자의 미국 사회보장세(15.3%)가 면제되고, 종전에 양국 연금제도에 가입기간이 나누어져 연금급여 수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던 근로자도 앞으로는 양국 연금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들과 기업의 사회보장 관련 부담이 경감되고, 양국 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금급여 혜택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사회보장세 절감으로 연간 약 350억원의 이익이 기대된다.

- 그 동안 우리 기업의 근로자가 미국의 현지법인, 지사, 출장소 등에 파견되어 근로를 하는 경우, 우리 나라 국민연금과 미국의 연방노령·유족·장애보험(OASDI)에 동시 가입되어 연금보험료(사회보장세)를 모두 납부해 왔음. 그러나 앞으로는 미국 파견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 우리 나라 국민연금제도만을 적용받게 되어, 연금과 관련된 미국의 사회보장세는 내지 않아도 됨. 협정으로 미국 사회보장세가 면제되는 수준은 총 15.3%(연금 12.4%, 의료보험 2.9% 포함)임.

※ 미국에 단기체류하는 우리 나라 지·상사 직원수는 약 2,700~3,000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이 미국에서 납부하고 있는 사회보장료 총액은 연간 약 3000만 불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됨.

- 그 동안 이민, 미국내 기업 취업, 장기 파견 근로 등으로 미국에 장기 체류하여 우리 나라의 국민연금과 미국의 연방노령·유족·장애보험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연금 가입기간이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연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급여수급권을 결정하게 되어 지금까지 지급받지 못했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됨. 다만, 한 쪽의 연금에 일정기간(우리 나라는 18개월, 미국은 6분기) 이상의 가입기간이 있어야 다른 나라의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음.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급여수급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연금급여액은 양국의 총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자국의 가입기간에 비례한 금액이 됨.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는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난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의 과도한 치료비부담 때문에 치료중단,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영아 사망과 장애아 발생을 낮추고 사회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실시하는 미숙아 의료비지원사업을 선천성이상아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다.

- 지원대상은 치료비 마련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대상 가정을 비롯하여 세 쌍둥이 출산가정,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실시함.
- 이를 위해 금년에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도에 배정하였으며, 점차 지원예산을 늘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태어나는 전체 출생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임. 현재 지원하고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신청은 의료기관이나 보호자가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바로 지급됨.
- 동 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출생관련통계 확보와 의료비 지원을 통한 사후관리 및 정보제공으로 장애아 발생예방은 물론 영유아 성장발달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됨.

## 국민연금보험료 자동계좌이체 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로 납부하는 가입자에게 매월 자동계좌이체에 따른 행정비용 전액(230원/월,인)을 돌려주기로 하였다. 대상은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로서 자동계좌이체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 전원이다.

- 보건복지부는 자동계좌이체에 따른 절감 비용을 자동계좌이체 납부자에게 환원하여 보험료부담을 덜어주고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확대하여 연금보험료를 안정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각 개인에게 감액되는 액수는 적으나 전체적으로는 자동이체자 약 330만 명에게 연간 약 78억 원(매월 6억 5천만 원)에 달하는 행정비용 절감액 전액을 가입자에게 환원함으로써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킴. 현재 자동계좌이체율은 55.0%(334만 3천 명)임.
- 금년 4월분 연금보험료(납부기한 5월 10일까지)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고지서로 납부하는

대신 자동계좌이체로 납부함에 따라 절감되는 만큼 매월 연금보험료에서 차감함.

- 자동계좌이체 제도는 가입자의 납부편의 및 수납기관의 업무비용 절감은 물론 우편물 송달 등의 사회적 비용절감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 차감혜택 제공으로 인해 자동계좌이체납부자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됨. 자동계좌이체 신청은 언제든지 '국번없이 1355'로 할 수 있음.

## 진료받은 전체 대상자들에게 진료내역 매월 통보 전국으로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당초 대도시 지역의 월 95만 세대, 450만 건(전체 수진 건수의 10%)에 대한 진료내역 통보를 했으나, 일정한 지역에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하라는 시민들의 요청이 이어지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4월부터는 통보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매월 진료 받은 전체 세대(9백만 여 세대)의 진료내역(4천만 여 건)에 대한 대국민 통보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공단은 보험재정의 실질적인 주인인 국민들이 진료내역 통보를 받고 진료비 적정청구 여부를 확인 조희함으로써, 국민의 보험재정 공동관리 의식 제고에 최선을 다하기로 한 것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월 16일부터 6대 도시(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수원)지역의 450여 만 건에 대한 진료내역을 국민들에게 통보한 결과, 17일 만인 4월 2일 현재 총 38만 5,579건이 확인 신고되었고, 이 가운데 0.9%인 3,395건이 진료 받은 사실과 다르게 청구 되었다고 신고되어,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 감시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 같은 신고 동향은 최근의 언론보도 등과 관련, 보험재정 위기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져, 2000년도의 경우 전체 신고율이 1.2%였던 데 비해 7배 이상에 해당되는 8.5%(38만 5,579건)의 신고율을 보인 것이라고 보고 있음. 또 신고된 사례 중 진료내역이 상이하다고 신고된 건수도 총 신고건수의 0.9%(3,395건)로서 2000년도 연간 부당사례 신고율 0.5%의 거의 2배에 해당하는 것임. 이러한 상황으로 보아 정부·공단·국민 등의 유기적인 보험재정 관리체제와, 의료계의 자정노력이 착실히 실시될 경우 보험재정에 대한 공동관리 의식 제고와 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